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국제관광서비스과)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연 월 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필기 과목의 시험대체 및 배점비율 조정으로 수험자의 학습부담 완화 및 실무역량 강화

2. 주요내용

가. 관광통역안내사,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 과목인 ‘국사’를 ‘한국사능력검정’으로 대체

“공무원·전문직·국가자격시험 등 한국사 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‘한국사능력검정시험(3급이상)’ 성적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며 연중 다회 실시 됨에 따라 수험생의 자격증 준비를 위한 학습 부담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.”

나.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배점비율 조정

“국사 과목의 대체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과목의 배점을 40%로 상향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 개론 배점을 각각 30%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함.”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별표 1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14의 2에서 정
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.

별표 1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시 험 과 목	배점비율
가. 관광통역안내사	한 국 사 (별 표 1 4 의 2 에 따 라 대 체)	—
	관광자원해설	40%
	관광법규(「관광기본법」·「관광진흥법」·「관광 진흥개발기금법」·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 률」 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30%
	관광학개론	30%
	계	100%
나. 국내여행안내사	한 국 사 (별 표 1 4 의 2 에 따 라 대 체)	—
	관광자원해설	40%
	관광법규	30%
	관광학개론	30%
	계	100%
다. 호텔경영사	관광법규	10%
	호텔회계론	30%
	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	30%

	호텔마케팅론	30%
	계	100%
라. 호텔관리사	관광법규	30%
	관광학개론	30%
	호텔관리론	40%
	계	100%
마. 호텔서비스사	관광법규	30%
	호텔실무(현관·객실·식당 중심)	70%
	계	100%

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4의2]

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(제46조 단서 관련)

시험의 종류		기준등급
한국사능력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 시험)을 말한다.	3급 이상

비고

1.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관광통역안내사,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 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. 이 경우 그 확인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2. 취득한 등급의 성적은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6조(필기시험)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. <단서 신설>		제46조(필기시험) ① ----- ----- ----- . 다만, <u>별표 14의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 표 14의 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.</u>		